

# 이사회 운영규정

제정 2010. 4. 1

개정 2016. 3.29

## 제 1 장 총 칙

### 제1조 (목적)

본 규정은 (주)아이마켓코리아의 이사회的高效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 (적용범위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 제3조 (권한)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.
- ③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,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④ 제3조 제3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- ⑤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고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
## 제 2 장 구 성

### 제4조 (구성)

이사회는 이사 전원(사외이사 기타 비상근이사 포함)으로 구성한다.

### 제5조 (의장)

-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.
- ②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 또는 대표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사장, 전무이사, 상무이사, 대표이사가 정한 이사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# 제6조 (관계인의 출석)

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## 제 3 장 회 의

### 제7조 (개최시기)

- ①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### 제8조 (소집권자)

-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. 다만,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이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### 제9조 (소집절차)

-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늦어도 회일 12시간 전에 각 이사에게 문서,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통지하여 소집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### 제10조 (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-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**제11조 (질서유지)**

- ①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동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,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회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의 발언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.

## 제 4 장 부의사항

**제12조 (부의사항)**

-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    - (1) 주주총회의 소집
    - (2) 영업보고서 및 재무제표의 승인
    - (3) 정관의 변경
    - (4) 자본의 감소
    - (5) 주식의 소각
    - (6) 회사의 해산, 합병, 분할합병, 회사의 계속
    - (7)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
    - (8)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,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
    - (9)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
    - (10) 주식의 액면미달발행
    - (11) 주식배당 결정
    - (12)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
    - (13) 이사의 선임 및 해임
    - (14)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
    - (15) 이사의 보수

(16)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
## 2. 경영에 관한 사항

- (1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(2) 공동대표의 결정
- (3)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 (위원의 선임 및 해임 포함)
- (4)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- (5) 지점, 출장소, 사무소 및 현지법인 등의 설치, 이전 또는 폐지
- (6)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

## 3. 재무에 관한 사항

- (1) 신주의 발행
- (2) 사채의 발행 (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포함)
- (3) 준비금의 자본전입
- (4)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
- (5) 중요한 자산의 처분
- (6) 대규모 재산의 차입
- (7)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
  - 일정규모<sup>주)</sup> 이상의 가지급금, 대여금 등의 제공 또는 거래  
단, 상장時에는 상법 제542조9에 의거 다음의 신용공여에 한함
    - ① 복리후생을 위한 이사에 대한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
    - ②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신용공여
    - ③ 그 밖에 상장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금전대여등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
  -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의 제공 또는 거래
  -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거래
  - 일정규모 이상의 보험계약

주) 일정규모 - MIN(100억원, 전연도말 자본총계 X 10%)

## 4. 자산에 관한 사항

- (1) 자산총액의 10%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

- (2) 자기자본의 5% 이상의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
- (3) 자기자본의 1% 이상의 증여 또는 수증
- (4) 자기자본의 5%이상의 담보제공, 채무보증, 채무인수, 채무면제

5. 이사에 관한 사항

- (1) 이사의 경업 및 동종업종 타회사의 임원의 겸임
- (2)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

6. 기 타

- (1) 이사회 운영규정 등 중요한 사규, 사칙의 규정 및 개폐
- (2)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1.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- 2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
- 3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## 제 5 장 위 임

### 제13조 (위임)

이사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.

### 제14조 (이사회 내 위원회)

-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- ④ 위원회의 권한,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
## 제 6 장 기 타

### 제15조 (의사록)

-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-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.  
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.

### 제16조 (간사)

-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.
- ② 간사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사무전반을 관리한다.

### 제17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.